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2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 석, 박춘선,
유정인, 이봉준, 이성배,
이원형, 장태용, 최민규,
최진혁, 홍국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지하개발사업으로 유출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하수처리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유출지하수 이용을 촉진하고자 신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규로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.(제3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단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u>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.</u>	제3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조(재정지원)제1항 중 “단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삭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34조(재정지원)

나. 전제

- 비용은 관련부서(물순환안전국)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추계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관련부서 제공자료 활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2,340,704천원(연평균 468,141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34조제1항(재정지원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	소계(a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
※ 서울시 예산서 활용

4. 덧붙이는 의견 : 공사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희선
 추계세제팀장 김중헌
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 ☎ 02-2180-7953
 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조(재정지원)제1항 중 “단,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”를 삭제함에 따라 추가 재정지원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≍ 2,340,704천원(연평균 468,141천원)
 = 33,504천원(1차년도) + 576,800천원(2차년도) + 1,730,400천원(3~5차년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34조제1항(재정지원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	소계(a)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33,504	576,800	576,800	576,800	576,800	2,340,704

※ 비용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제공자료를 이용하여 추계

- 2025년 (설계비만 반영) : 33,504천원

- <국비편성> 418,800천원 = ① 118,800천원 + ② 300,000천원

① 소규모 5개소 x (사업비 792,000천원 x 6%**) x 50%*** = 118,800천원

② 대규모 5개소 x (사업비 2,000,000천원 x 6%**) x 50%*** = 300,000천원

* '25년 설계비만 편성하여 집행률 제고 1년(설계-공사) → 2~3년(1년 설계, 1~2년 공사)

** 설계요율 : 사업비의 6% / *** 국고보조율 50%

- <시비 추계액> 국비 50%, **시비 20%**, 구비 20%, 민간 10%

- <총산출내역> 418,800천원×20%(서울시 선정비율)×2/5(국비 제외 사업비 중 서울비 부담율) = 33,504천원

○ 2026년 (설계비, 공사비 반영) : 576,800천원

- <국비 편성예정액> 설계비 410,000천원 + 공사비 6,800,000천원 = 7,210,000천원

- <시비 추계액> 국비 50%, **시비 20%**, 구비 20%, 민간 10%

- <총산출내역> 7,210,000천원×20%(서울시 선정비율)×2/5(국비 제외 사업비 중 서울비 분담율) = **576,800천원**

○ 2027년~2029년 : 1,730,400천원

- 2026년 총산출내역 × 3개년 = 576,800천원 × 3개년 = **1,730,400천원**